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62<sup>th</sup> November 2013

- ▶ WHERE IS GRACE CHANG?:  
백문이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2
- ▶ ABOUT WRITERS  
.....2
- ▶ COVER STORY:  
수출기업, 폭주하는 FTA 원산지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3
- ▶ FTA NEWS:  
한-중 FTA 상품분야의 1 단계 협상 주요 내용  
및 2 단계 협상 과제  
.....4
- ▶ VOICES FROM THE FIELDS: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처분  
.....6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8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㉔  
.....10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백문이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장승희  
대표 관세사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한 제자가 들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접하는 특이한 일이 아니라도,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내게 전달해주는 사람의 말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100%인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자신의 주장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이들은 믿지 못하던 사실이었던라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100 번을 설명해 주는 것 보다 한번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몇 주전 제 23 차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07 년 대통령소속으로 설치•운영되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된 FTA 관련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위원회입니다. FTA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더불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와 달리 참석한 농민대표 위원들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였습니다. 한•중 FTA 의 진행에 대비해 중국을, 중국시장을 방문한 농민 대표단이 국산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중 FTA 에 따라 저가로 밀려들어올 중국산 농산물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걱정하던 관점에서 고품질의 국산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자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즉, 고품질의 농산품으로 중국에 진출하자는, FTA 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이번호 Cover Story 는 FTA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제목입니다. FTA 의 혜택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꼭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FTA News 도 역시 한•중 FTA 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한 정부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Voice from the Fields 는 보세장치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시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US Customs Rulings 로 알아보는 관세평가는 생산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비교적 가능합니다. 부디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百聞이 不如一見 이니까요.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수출기업, 폭주하는 FTA 원산지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이 흥 로 관세사  
([hrlee@customsservice.co.kr](mailto:hr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원산지 관리사
- 수출입 통관, 환급, FTA 컨설팅 및 심사업무 수행

FTA News-

한•중 FTA 상품분야의 1 단계 협상  
주요 내용 및 2 단계 협상 과제



최 헤 지 관세사  
([hjchoi@customsservice.co.kr](mailto:h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3 팀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수출입통관, FTA 및 AEO 컨설팅 수행

Voices From The Fields-/

관세 법령 변경 -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처분



이 동 현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사
- FTA 컨설팅

RULINGS @

Video Game 제작을 위해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Code 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융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 수출기업, 꼭 주하는 FTA 원산지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3년 5월 발효된 한-터키 FTA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47개국과 9개의 FTA를 발효한 'FTA 허브(Hub)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FTA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발효하였고, FTA 발효국과 교역이 우리나라 총 교역의 약 34.8%를 점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일본 등과 FTA가 발효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효국과 교역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FTA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EU, 미국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건, 2011년 84건, 2012년 229건, 2013년 9월까지 290건으로 원산지 검증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인식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며, 원산지 자체 관리능력도 극히 미흡하다.

상대국 원산지 검증에 나선 업체 가운데 17%가 부실한 원산지관리로 인해 특혜관세율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관리 부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원산지 검증이 나왔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특혜관세율이 배제되어 세금 추정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세금 추징으로 인해 상대국 수입업자와의 무역분쟁은 물론, 무역거래 단절까지 가져올 수 있기에 원산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원산지 검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최근 제 23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FTA의 발효 역사가 만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종관문인 FTA 원산지 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정성,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원산지 관련 자료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FTA 별로 원산지 검증 방식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 시 대응방법도 상이하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FTA 분야에서의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홍로

[hrlee@customsservice.co.kr](mailto:hrlee@customsservice.co.kr)

# FTA NEWS

## 한-중 FTA 상품분야의 1단계 협상 주요 내용 및 2단계 협상 과제

### 1. 개요

한국- 중국의 양국간 FTA 협상은 2012년 5월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1년 4개월 여 만인 2013년 9월에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1단계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정부는 상품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10%는 초민감 품목으로 정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서는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선정 등을 앞두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동안 對中 교역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을 준비할 시기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3),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VIP 리포트 13-32, 통권 542호, i]

### 2. 한-중 FTA 상품분야의 1단계 협상 주요 내용

#### 1) 단계 별 품목 협상에 대한 협의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 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는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2) 한-중 FTA 상품 모델리티 구조 및 자유화율

양국은 상품을 일반 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에 한해서만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다. 즉,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된 상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추후 협상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합의하였다.

\*저울할당관세(TRQ : Tariff Rate Quotas) :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양허방식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즉시철폐~10년 내 철폐	10년 이상~20년 내 철폐	양허 제외, 부분관세,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등 보완장치 마련
▶ 자유화 수준 품목수 기준(90%), 수입액 기준(85%)		품목수 기준(10%), 수입액 기준(15%)

### 3. 한-중 FTA 상품분야의 2 단계 협상의 중요 과제

양측은 향후 2 단계 협상에서,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에 각각 어떠한 품목을 선정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시에 예상되는 최대 피해 분야인 농수산물과 생활용품을 초민감 품목군 또는 민간 품목군으로 지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 동안의 對中 수출품목을 분석하고, 고관세이면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중국 측의 관세양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자국 산업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것이 2 단계 협상의 중요 과제일 것이다. [국제무역연구원(2013), "한-중 FTA 협상 2 단계 진입, 이제 적극적 이익 확보가 과제", Trade Brief, No.30, 8]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혜지

[hjchoi@customsservice.co.kr](mailto:hjchoi@customsservice.co.kr)

# Voices From The Fields

##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처분

### 1. 개요

10 월 16 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13 년 제 5 차 장치기간 경과물품(일반물품) 매각공고를 하였다.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하며 수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종류별로 장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관장은 공고한 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2. 보세구역별 장치기간

보세구역별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장치기간을 경과할 경우 세관장은 공고 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보세구역	장치기간
지정장치장	6 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 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보세창고	1 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창고 외 특허보세구역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장치기간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함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1 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3. 매각의 절차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월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② 세관장은 매각을 하는 경우,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해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1 월 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 4. 매각의 방법

매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쟁입찰 :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 일 이상의기간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가격의 100 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으며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 분의 50 으로 한다.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경매 또는 수의계약 : 2 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 ③ 위탁판매 : 상기한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5. 매각대금의 처리

상기한 방법에 의해 매각된 물품의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충당 후 잔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 6. 소결

수출입 허가, 승인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통관이 불허된 경우, 장치물품이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화주가 수입통관을 회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장치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매각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화물품의 매각은 관세의 적기확보, 보세구역의 활용효율 증대,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감축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주는 각 보세구역별 장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러한 매각 물품을 예의주시하여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품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 >

- ※ 인천공항세관 매각물품 목록 확인  
<http://www.customs.go.kr/airport> (공매소식방)
- ※ 인천공항세관 전자입찰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개정사유

-FTA 확대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FTA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간소  
화 필요

-종전 고시는 법령 규정사항이 중복되어 있고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법규체계가  
맞지 않아 전면 개정 요구

### □주요 개정내용

가.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  
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심사없이 자동  
으로 발급 (제 11 조)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품목을 반복수출하는 경  
우, 매 1 년의 기간동안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접수  
후 2 시간이 지나면 자동발급)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간  
소화(제 27 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33  
개→26 개)

-적용신청 품목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간이서식  
신설

나. FTA 집행 과정에 필요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

○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규정 미비  
사항 보완

-EU, 미국, 터키와의 FTA 에 따른 총 31 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 중

○ 원산지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제 53 조)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 에서 공표토록  
의무화

○ 반복수출하는 동종 동질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 생략

-최근 1 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이고 동일 수출국인  
경우와 최근 1 년 이내 동일재료 동일공정 생산  
물품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후 신청취하할 수 있도  
록 규정(제 18 조)

다.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리

○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식제정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제 54 조),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제 58 조),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  
(제 20 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후 신청취하할 수 있도  
록 규정(제 18 조)

□시행일자 : 2013.10.11 (금)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사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 95 조제 2 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 퍼센트로 하되, 2014 년 3 월 31 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 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 9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 □개정사항

제 46 조제 4 항제 2 호 중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제 59 조제 3 항에"를 "제 59 조 제 3 항에"로 "100 분의 30"을 100 분의 30(2014 년 3 월 31 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 분의 50)"으로 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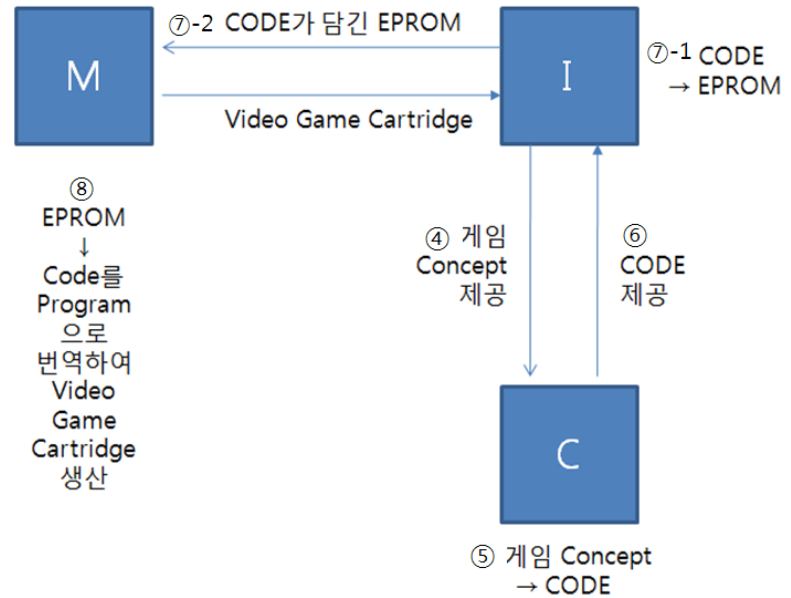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 46 조제 4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 Video Game 제작을 위해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Code 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HQ545279 1994.11.30)



## □ 거래사실(Facts)

### 1. 당사자의 관계

- 미국에 소재하는 수입자(I)는 가정용 오락기계에 사용되는 비디오 카트리지를 수입
- 제조자(M)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디오 카트리지를 제조 후 수입자에게 판매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C는 I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업체

### 2. 거래흐름

- ① 비디오 카트리는 인쇄회로 기판에 납땜되어 있는 집적회로와 ROM(Read only memory)으로 구성됨
- ② 게임에 사용되는 콘셉트는 영화, 만화 또는 TV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수입자가 개발함
- ③ 게임용 콘셉트는 code로 변환되어 비디오 카트리지에 탑재됨
- ④ I는 게임용 콘셉트를 code로 변환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C)와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용 콘셉트를 C에게 제공
- ⑤ C는 콘셉트를 code로 변환
- ⑥ C는 콘셉트 code를 Floppy disk의 형태 또는 전자전송방식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
- ⑦ I는 C로부터 전달받은 code를 EPROM(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소거 프로그램 가능 ROM)에 옮겨 담아 M에게 무상으로 송부함
- ⑧ M은 EPROM에 담긴 code로 photomask를 만들어 프로그래밍 패턴을 제작하고, 이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에 옮겨 비디오 카트리지를 구성하는 ROM을 생산함

⑨ 일반적으로는 I 가 C 에게 Character 를 제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C 가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I 가 획득하기 위해서 Video Game 의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C 에게 지급하여야 함

⑩ I 는 C 로부터 Code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Coding Service 를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는 선불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Video Game 의 판매분에 대하여 분할로 지급함

### □ 쟁점(Issue)

1. 생산자에게 생산지원이 있었는지의 여부
2. 생산지원비용의 금액 결정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

(1)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의 규정에 의거한 거래 가격방법

(2)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3)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나. 생산지원(Assist)

(1)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적절히 분배된 금액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임

(2) 생산지원이란, 다음의 것 중 하나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함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또는 장비 등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development), 공예, 도안, 설계, 디자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것

#### 2. 쟁점 1 에 대한 검토

가. 문제의 핵심은 Code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development)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나. 본 사안의 경우 Code 는 M 이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 가 원하는 게임의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Code 가 없이는 게임이 탄생할 수 없음

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Coding Service 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required)"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라. 관련예규 인용  
관세청에서는 지난 1981 년도에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제조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상세한 제품명세서도 관세목적상 생산지원에 해당됨을 결정한 바 있음 (HRL542498, 1981)

#### 3. 쟁점 2 에 대한 검토

가. I 와 C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I 는 Coding Service 이용료와 Code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로열티로 C 에게 지급함

나. I 가 C 로부터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함

다. 관련 예규 인용

(1) HRL542152, 1980

생산지원비용은 선급금과 로열티지급금액을 포함한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의 취득비용임

(2) HRL544459, 1991

(가) 수입자는 향후 생산될 예정인 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위해 해외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 3 의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매

(나) 디자인 등은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다) 수입자는 디자인 등을 얻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함

(라) 관세청은 수입자가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함

라. 본 사안의 경우, I가 Coding Service 를 이용하고, Code 를 사용하고, Character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C 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든 또는 로열티로 지급한 것이든 생산 지원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음

마. 관세법 시행령 152.103(e)에 따라서 생산지원 비용은 적절히 배분될 수 있음

#### □ 결정(Holding)

쟁점 1.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은 있음

쟁점 2. 생산지원비용은 I 가 생산지원용역을 취득 하는 비용 즉, 선급금 및 로열티지급금액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